

학점 취득 방법

국가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학점원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이후 이수 또는 취득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2015.9.27까지)에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01

평가인정 학습과정

>

수업환경(시설·강사조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받은 기관(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과목

학점인정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함.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인정됨.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제한 학점 적용 : 1년 42학점 / 1학기 24학점
(학기의 기준 - 1학기 : 3/1 ~ 8/31, 2학기 : 9/1 ~ 다음해 2월 말일)
 - ※ 학위취득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기준(학기 : 3/1 ~ 7/15, 2학기 : 9/1 ~ 다음해 1/15)
 - ※ 학기 적용 기준은 종강일 기준임.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적용됨.
 - :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

이수방법

- 수업일정, 수강비용 등의 운영 제반사항은 각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 교육훈련기관 검색 방법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 - 교육기관 정보-교육기관 검색(전공, 지역, 과목별 검색 가능)

02

학점인정대상학교

>

- 의미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또는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의 학교와 학력이 인정되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학점인정기준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함(점수와 관계없이 F 과목은 불인정).
- 2년제 전문대학 제적 또는 졸업 시 최대 80학점(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함.
- 4년제 대학 제적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함.
 -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수학점은 인정 불가함.

학습구분 결정기준(학습구분 종류 : 전필, 전선, 교양, 일선)

-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라 학점을 인정함.
-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됨.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주의사항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 중 타학점원(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이 적용됨.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

03 시간제 등록

-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제57조 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 대학 포함)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에게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

학점인정기준

-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점수와 관계없이 F 과목은 불인정).
- 1개 대학에서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됨.

[1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근거조항	1개 대학 최대 이수 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해당대학의 매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1/2학점

- 학습구분 결정기준은 학점인정대상학교와 동일함.

이수방법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인원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등록의 시행여부, 개설과목, 수업일정, 수강비용 등의 운영 제반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 사이버대학 종합정보시스템 : www.cuinfa.net (전국 사이버대학 및 학과소개, 입학정보 안내)

04 자격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 「제20차 자격학점인정기준고시(17. 10. 1시행)」: 자격 학점인정이란 자격취득 등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함.

학점인정기준

- 학위종류별 자격학점인정 기준
: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함(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1개 자격만 인정)
- 전공과 연계되는 자격은 '전공필수'학점으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됨. 일반선택 자격은 1개만 인정 가능함.
-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능함.
※ 동일직무 :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2개(전공2개 또는 전공1개+비전공1개)	3개(전공3개 또는 전공2개+비전공1개)	1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전 공 : 전공과 연계된 자격을 의미함.
- 비전공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을 의미함.

학점인정 자격 검색 방법

- 제20차 자격학점인정 기준 고시파일 다운로드 경로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 → [공지사항] 10532번 "[고시]제20차 자격학점인정 기준"
- ※ 자격학점인정 기준은 매해 고시되므로, 최근 고시된 자료를 확인해야 함.
- 홈페이지 → 제도소개 → 학점인정 대상 → '자격'에서 전공별, 자격별 검색 가능

05 독학학위제

-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

학점인정기준

-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함.

과정	인정학점
교양과정인정시험 (1과정)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과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과정)	

- 독학학위제 전공을 달리하여 각 과정별 과목을 합격하더라도 과정별 인정 가능한 최대학점 범위 내에서만 학점 인정됨.
- 1과정은 교양으로, 2~4과정은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단, 1과정 과목 중 일부는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함).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불가함.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기준 적용됨.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http://bdes.nile.or.kr>

- 독학학위제 전공분야, 과정별 응시요건,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 확인이 가능함.

06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화생의 전수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함.

학점인정기준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됨.
- 등급별 인정 학점

등급	인정학점	비고
보유자	140학점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 학력)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학점인정신청 시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요건 충족함.
전수교육조교*	50학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함.
이수자	30학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2년이상	14학점
	1년이상	7학점
	6개월이상	4학점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세부 인정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본 자료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간행물

*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콘텐츠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제도 이용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